

울산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단1175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문옥, 양선화, 유병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진

담당변호사 김태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영진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4. 21. 작성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증서 2021년 제181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을 134,863,27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4,863,2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4. 21. 작성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증서 2021년 제181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국민연금공단은 2017. 10. 31. E과 전북 완주군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22.부터 2020. 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반환채무를 보증내용으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이 2019. 6. 19.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C은 2019. 6. 27. 이 사건 아파트를 H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I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93,800,000원, 채무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국민연금공단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임차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위 계약의 종료 후에도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20. 2. 25. 원고에게 위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20. 4. 23. 국민연금공단에 보험금 24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4. C, H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4.부터 2020. 6. 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4042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C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고, 다만 위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총 123,066,169원을 환입받아 2022. 2. 14. 기준 위 구상금채권액은 134,863,276원이다.

마.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인 주식회사 J의 신청에 따라 2020. 9. 7.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인천지방법원 K)(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C은 2021. 4. 21. 피고와 사이에 위 일자까지 수 회에 걸쳐 차용한 돈의 합계액 400,000,000원을 2021. 4. 2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증서 2021년 제181호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어서 피고는

2021. 5. 3.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잉여금 배당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부산지방법원 2021타채2476호), 2021. 5. 6. 인용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 20.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C이 잉여금으로 282,051,304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위 배당금 282,051,304원 전액을 교부받았다.

아.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L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위

채무변제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M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M은 C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 M이 모두 각 대여금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로써 C이 M을 대신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총 400,000,000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의 C은 피고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잉여금 배당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피고 주장의

대여금채권을 사실상 우선변제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한편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전부채권의 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전부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그 부분 전부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2) 판 단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등 합계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2. 14.을 기준으로 134,863,27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인 위 134,863,27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34,863,2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6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9층 호 84.7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 16488.8㎡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6488.8분의 45.31

끝.